

의안번호	2210840
의 퇴 인	한준호의원
회 답 일	2025.7.9.
추계번호	25B321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의2 신설 (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·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, 인증절차,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3조의2제2항·제4항·제5항 (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) -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운영 -	• 미대상 : 국토교통부는 「주택법」 제51조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, 「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중([참고자료]) - 인정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수입을 통해 충당하므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음
2	안 제53조의2제3항 (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) - 모듈러주택 사업주체 및 취득자에 대한 행정상·세제상 지원 -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·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‘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’ 행정상·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모듈러주택 공급주체 및 취득자에 대한 행정상·세제상 지원의 내용,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,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－ 다만,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(용자)(1388-406)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경우, 대출한도를 10% 상향 지원하는 모듈러주택(용자)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

[표 1] 통합공공임대(모듈러주택 용자) 사업 예산현황: 2024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명	2024	2025
모듈러주택(용자)	3,378	5,382

자료: 국토교통부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nabo.go.kr

[참고자료]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요¹⁾

□ 공업화주택의 정의

-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,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성능·생산기준에 따라 맞춤형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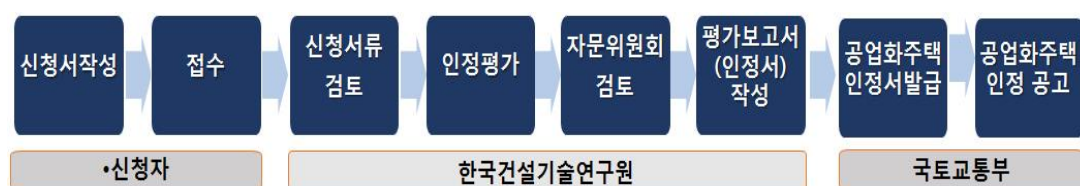
□ 제도도입 배경

- 기존 현장중심의 습식 공동주택과 달리 공장생산을 통한 현장조립 방식의 공업화주택 건설을 통한 품질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
- 짧은 공사기간으로 주택경기·수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‘공업화주택’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도입

□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및 별표6)

구 분			기 준
성능기준	구조안전 성능	구조부분	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
		접합부	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 안전성 확보
	내화 및 방화성능	내화성능	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
		방화성능	
	환기성능		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적합
	열환경성 능	단열성능	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에 적합
		결로방지 성능	「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」에 적합
	음환경성 능	세대간 경 계벽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적합
		바닥 충격음	
생산기준	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		
	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		
	그 밖의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		

□ 인정절차



1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